

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: 운동장]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2026. 3. 23.(월)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6. 3. 4.

나. 제안자: 인천광역시[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]

다. 회부일자: 2026. 3. 6.

라. 상정일자: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6. 3. 23.)

- 제안설명: 이원주 도시계획국장
- 검토보고: 윤주인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- 심사결과: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문학경기장 내 전문체육인 양성·훈련을 위한 다목적훈련장을 신축하고자,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세부시설 조성계획]을 변경(결정)하는 건으로,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하는 사항임.

나. 주요내용

1) 개요

- 위치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
- 내용: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세부시설 조성계획] 결정(변경)
 - 토지이용계획 변경
 - 다목적훈련장 증)6,252.7㎡, 보조경기장 감)5,018.8㎡, 기타 감)1,233.9㎡
 - 건축물 조서 변경
 - 다목적훈련장(연면적): 증) 3,094.38㎡
- 시설면적: 432,034.5㎡(문학종합운동장)
- 사업기간: 2026. ~ 2027.
- 사업비: 171억 원 *시비 100%
- 사업시행자: 인천광역시장

2) 추진경위

- 1992. 3. 17.: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결정(인천고시 제1992-39호)
 - * 최초결정
- 2026. 2. 5.: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] 결정(변경) 입안 요청(체육진흥과→도시관리과)
- 2026. 2. 9. ~ 2. 20.: 관계기관(부서) 협의
- 2026. 2. 9. ~ 2. 24.: 주민 공고·열람 실시

3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내용

○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-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-	체육 시설	운동장	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	432,034.6	-	432,034.6	인천직할시고시 제1992-39호 (1992. 3. 17.)	변경 없음

○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(변경)(안)

- 토지이용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세부시설명	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①	주경기장	경기장	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	53,708.0	-	53,708.0	1992. 3.17.	
기정	②	야구장	경기장		38,443.4	-	38,443.4		
기정	③	실내체육관	경기장		12,664.0	-	12,664.0		
기정	④	실내수영장	경기장		10,620.8	-	10,620.8		
변경	⑤	보조경기장	경기장		18,669.0	-	18,669.0		
			운동시설		6,456.0	감 5,018.8	1,437.2		
			화장실		34.0	-	34.0		
			소계		25,159.0	감 5,018.8	20,140.2		
기정	⑥	선수숙소	숙소		5,823.0	-	5,823.0		
기정	⑦	생활체육시설	운동시설		1,672.0	-	1,672.0		
기정	⑧	주차장			14,806.7	-	14,806.7		
기정	⑨	녹지			106,499.5	-	106,499.5		
기정	⑩	도로			44,599.4	-	44,599.4		
변경	⑪	기타		117,174.8	감 1,233.9	115,940.9			
기정	⑫	근린생활시설		864.0	-	864.0			
변경	⑬	다목적훈련장		-	증 6,252.7	6,252.7			
합계					432,034.6	-	432,034.6		

- 건축물에 관한 계획1)

건폐율	용적률	높이
20% 이하	80% 이하	60m 이하

- 건축물 결정 조서2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건축물 명칭	건축물의 용도	건축면적(㎡)			용적률 산정용 연면적(㎡)			건축물의 높이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-	-	71,709.62	중) 2,501.87	74,211.49	130,630.32	중) 3,094.38	133,724.70	-	-
기정	①	인천문학경기장 1동 (주경기장)	운동시설,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등	34,355.89	-	34,355.89	76,257.99	-	76,257.99	지상 5층 (60m)	-
기정	②	인천문학경기장 3동 (야구장)	운동시설,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등	23,755.56	-	23,755.56	32,675.68	-	32,675.68	지상 5층 (41m)	-
기정	④	인천문학경기장 문학박태환수영장	문화 및 집회시설, 업무시설 등	10,620.83	-	10,620.83	15,584.34	-	15,584.34	지상 3층 (27m)	-
기정	⑤	인천문학경기장 2동 (보조경기장)	운동시설	1,008.94	-	1,008.94	1,008.94	-	1,008.94	지상 1층 (관람석: G.L.+7.25m)	-
기정	⑥	인천선수단 숙소 인천선수단 기숙사	기숙사	1,104.4	-	1,104.4	3,207.37	-	3,207.37	문학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구역 ³⁾	
기정	⑫	6동 문학스퀘어-1	근린생활시설	624.00	-	624.00	1,248.00	-	1,248.00	지상 2층 (8m)	-
		7동 문학스퀘어-2	근린생활시설	240.00	-	240.00	648.00	-	648.00	지상 3층 (8m)	-
변경	⑬	다목적훈련장	운동시설	-	중) 2,501.87	2,501.87	-	중) 3,094.38	3,094.38	문학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구역 ³⁾	

1)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(국토교통부령 제679호, 2019.12.27.)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임.

2)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(국토교통부령 제679호, 2019.12.27.)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임.

3) “문학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구역” 내 건축물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(건폐율(60%이하)·용적률(200%이하)·높이(6층이하))을 따름.

-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				변경 사유
-	체육시설 (운동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이용계획 세부시설 면적 변경 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목적훈련장 신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세부시설 면적 변경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(국토교통부령 제679호, 2019.12.27.)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임. * 다목적훈련장 신축에 따른 변경사항 포함
		도면 표시	구분	기정	변경	변경후	
		⑤	보조 경기장	25,159.0	감)5,018.8	20,140.2	
		⑪	기타	117,174.8	감)1,233.9	115,940.9	
		⑬	다목적 훈련장	-	증)6,252.7	6,252.7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에 관한 계획 및 건축물 조서 반영 					

4)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(부서) 협의

○ 주민 공고·열람 : 2026. 2. 9. ~ 2026. 2. 24.

- 의견 없음

○ 관계기관(부서) 협의: 7개 기관(부서) 협의

- 전부 반영(반영 2건)

5) 향후계획

○ 2026. 4.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○ 2026. 5. :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운동장) 세부시설 조성
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○ 금번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대상지는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문학종합운동장 부지 내로,
- 기존 보조경기장 및 기타부지 일부를 조정하여 다목적훈련장 부지를 확보하고, 이에 따른 건축물 조서를 변경하는 내용임.

< 토지이용계획 결정(변경) 조서 >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세부시설명		위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①	주경기장	경기장	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	53,708.0	-	53,708.0	1992. 3.17.	
기정	②	야구장	경기장		38,443.4	-	38,443.4		
기정	③	실내체육관	경기장		12,664.0	-	12,664.0		
기정	④	실내수영장	경기장		10,620.8	-	10,620.8		
변경	⑤	보조경기장	경기장		18,669.0	-	18,669.0		
			운동시설		6,456.0	감) 5,018.8	1,437.2		
			화장실		34.0	-	34.0		
			소계		25,159.0	감) 5,018.8	20,140.2		
기정	⑥	선수숙소	숙소		5,823.0	-	5,823.0		
기정	⑦	생활체육시설	운동시설		1,672.0	-	1,672.0		
기정	⑧	주차장			14,806.7	-	14,806.7		
기정	⑨	녹지			106,499.5	-	106,499.5		
기정	⑩	도로			44,599.4	-	44,599.4		
변경	⑪	기타		117,174.8	감) 1,233.9	115,940.9			
기정	⑫	근린생활시설		864.0	-	864.0			
변경	⑬	다목적훈련장		-	증) 6,252.7	6,252.7			
합계					432,034.6	-	432,034.6		

○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전체 면적(432,034.6㎡)에는 변동이 없 으며, 내부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시설 총량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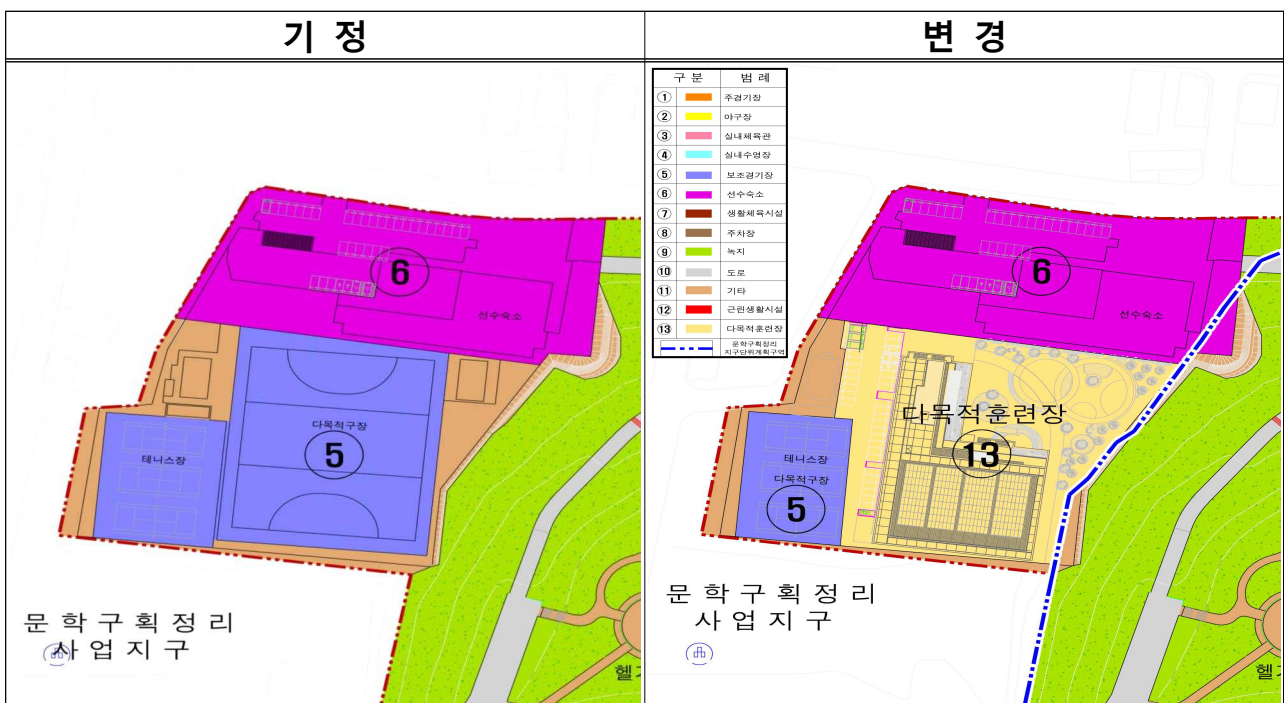
○ 다음으로, 건축계획과 관련하여 살펴보면,

- 다목적훈련장은 지하1층·지상2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, 건폐율 60% 이하, 용적률 200% 이하, 높이 6층 이하 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항임.
- 또한 대상지는 문학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므로, 기 결정된 건폐율·용적률 기준 범위 내에서 계획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한편,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 사업은 2008년 승의운동장 도시개발로 기존 실내 체육관이 철거된 이후 지역 전문체육인을 위한 대체 훈련 공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,

- 금번 다목적훈련장 건립은 장기간 미충족 상태로 남아 있던 전문체육 인프라를 보완하는 성격의 사업으로 보임.

<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확대도 >



- 금번 변경안은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이나 면적 확대를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라,
 - 이미 결정된 운동장 시설 범위 내에서 세부시설을 조정하는 계획 변경에 해당하며,
 - 체육 인프라 기능 보완 및 전문체육인 양성 기반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.
- 종합적으로 살펴보면,
 - 금번 변경안은 문학경기장 내 전문체육인을 위한 대체 훈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 변경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 - 다만, 총사업비 171억 원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, 향후 시설 운영계획 수립 시 시민과의 공유·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- 문학경기장 내 전문체육인 양성·훈련을 위한 다목적훈련장을 신축하고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.

가. 찬 성: 김대중, 석정규, 김종득, 박종혁, 허식 위원

나. 반 대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(재석위원: 5명, 찬성: 5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- 특이사항 없음.

붙임 의안본문[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운동장) 세부시설 조성
계획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] 1부. 끝.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운동장) 세부시설
조성계획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운동장)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6. 3. .

제 출 자: 인천광역시

1. 제안 이유

- 문학경기장 내 전문체육인 양성·훈련을 위한 다목적훈련장을 신축하고자,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세부시설 조성계획]을 변경(결정)하는 것으로,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하는 사항임.

2. 주요 내용

- 위 치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
- 내 용 :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세부시설 조성계획] 결정(변경)
 - 토지이용계획 변경
 - 다목적훈련장 증)6,252.7㎡, 보조경기장 감)5,018.8㎡, 기타 감)1,233.9㎡
 - 건축물 조서 변경
 - 다목적훈련장(연면적): 증) 3,094.38㎡
- 시설면적 : 432,034.5㎡ (문학종합운동장)
- 사업기간 : 2026. ~ 2027.
- 사 업 비 : 171억 원 * 시비 100%
- 사업시행자: 인천광역시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내용

○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가.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-	체육 시설	운동장	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	432,034.6	-	432,034.6	인천직할시고시 제1992-39호 (1992. 3. 17.)	변경 없음

○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(변경)(안)

가. 토지이용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세부시설명	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①	주경기장	경기장	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	53,708.0	-	53,708.0	1992. 3.17.	
기정	②	야구장	경기장		38,443.4	-	38,443.4		
기정	③	실내체육관	경기장		12,664.0	-	12,664.0		
기정	④	실내수영장	경기장		10,620.8	-	10,620.8		
변경	⑤	보조경기장	경기장		18,669.0	-	18,669.0		
			운동시설		6,456.0	감 5,018.8	1,437.2		
			화장실		34.0	-	34.0		
			소계		25,159.0	감 5,018.8	20,140.2		
기정	⑥	선수숙소	숙소		5,823.0	-	5,823.0		
기정	⑦	생활체육시설	운동시설		1,672.0	-	1,672.0		
기정	⑧	주차장			14,806.7	-	14,806.7		
기정	⑨	녹지			106,499.5	-	106,499.5		
기정	⑩	도로			44,599.4	-	44,599.4		
변경	⑪	기타		117,174.8	감 1,233.9	115,940.9			
기정	⑫	근린생활시설		864.0	-	864.0			
변경	⑬	다목적훈련장		-	증 6,252.7	6,252.7			
합계					432,034.6	-	432,034.6		

나. 건축물에 관한 계획⁶⁾

건폐율	용적률	높이
20% 이하	80% 이하	60m 이하

6)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(국토교통부령 제679호, 2019.12.27.)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임.

다. 건축물 결정 조서⁷⁾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건축물 명칭	건축물의 용도	건축면적(㎡)			용적률 산정용 연면적(㎡)			건축물의 높이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-	-	71,709.62	증) 2,501.87	74,211.49	130,630.32	증) 3,094.38	133,724.70	-	-
기정	①	인천문학경기장 1동 (주경기장)	운동시설,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등	34,355.89	-	34,355.89	76,257.99	-	76,257.99	지상 5층 (60m)	-
기정	②	인천문학경기장 3동 (야구장)	운동시설,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등	23,755.56	-	23,755.56	32,675.68	-	32,675.68	지상 5층 (41m)	-
기정	④	인천문학경기장 문학박태환수영장	문화 및 집회시설, 업무시설 등	10,620.83	-	10,620.83	15,584.34	-	15,584.34	지상 3층 (27m)	-
기정	⑤	인천문학경기장 2동 (보조경기장)	운동시설	1,008.94	-	1,008.94	1,008.94	-	1,008.94	지상 1층 (관람석: G.L.+7.25m)	-
기정	⑥	인천선수단 숙소 인천선수단 기숙사	기숙사	1,104.4	-	1,104.4	3,207.37	-	3,207.37	문학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구역 ⁸⁾	-
기정	⑫	6동 문학스퀘어-1	근린생활시설	624.00	-	624.00	1,248.00	-	1,248.00	지상 2층 (8m)	-
		7동 문학스퀘어-2	근린생활시설	240.00	-	240.00	648.00	-	648.00	지상 3층 (8m)	-
변경	⑬	다목적훈련장	운동시설	-	증) 2,501.87	2,501.87	-	증) 3,094.38	3,094.38	문학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구역 ⁸⁾	-

라.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																				
-	체육시설 (운동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이용계획 세부시설 면적 변경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도면 표시</th> <th>구분</th> <th>기정</th> <th>변경</th> <th>변경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⑤</td> <td>보조 경기장</td> <td>25,159.0</td> <td>감) 5,018.8</td> <td>20,140.2</td> </tr> <tr> <td>⑪</td> <td>기타</td> <td>117,174.8</td> <td>감) 1,233.9</td> <td>115,940.9</td> </tr> <tr> <td>⑬</td> <td>다목적 훈련장</td> <td>-</td> <td>증) 6,252.7</td> <td>6,252.7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건축물에 관한 계획 및 건축물 조서 반영 	도면 표시	구분	기정	변경	변경후	⑤	보조 경기장	25,159.0	감) 5,018.8	20,140.2	⑪	기타	117,174.8	감) 1,233.9	115,940.9	⑬	다목적 훈련장	-	증) 6,252.7	6,252.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목적훈련장 신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세부시설 면적 변경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(국토교통부령 제679호, 2019.12.27.)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임. * 다목적훈련장 신축에 따른 변경사항 포함
도면 표시	구분	기정	변경	변경후																			
⑤	보조 경기장	25,159.0	감) 5,018.8	20,140.2																			
⑪	기타	117,174.8	감) 1,233.9	115,940.9																			
⑬	다목적 훈련장	-	증) 6,252.7	6,252.7																			

7)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(국토교통부령 제679호, 2019.12.27.)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임.

8) “문학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구역” 내 건축물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 용적률(60%이하)·용적률(200%이하)·높이(6층이하)를 따른.

4.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(부서) 협의

- 주민 공고·열람 : 2026. 2. 9. ~ 2026. 2. 24.
 - 의견없음
- 관계기관(부서) 협의 : 7개 기관(부서) 협의 * 【붙임4】
 - 전부 반영(반영 2건)

5. 추진 경위

- 1992. 3. 17.: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결정(인천고시 제1992-39호) * 최초결정
- 2026. 2. 5.: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] 결정(변경)
입안 요청(체육진흥과→도시관리과)
- 2026. 2. 9. ~ 2. 20.: 관계기관(부서) 협의
- 2026. 2. 9. ~ 2. 24.: 주민 공고·열람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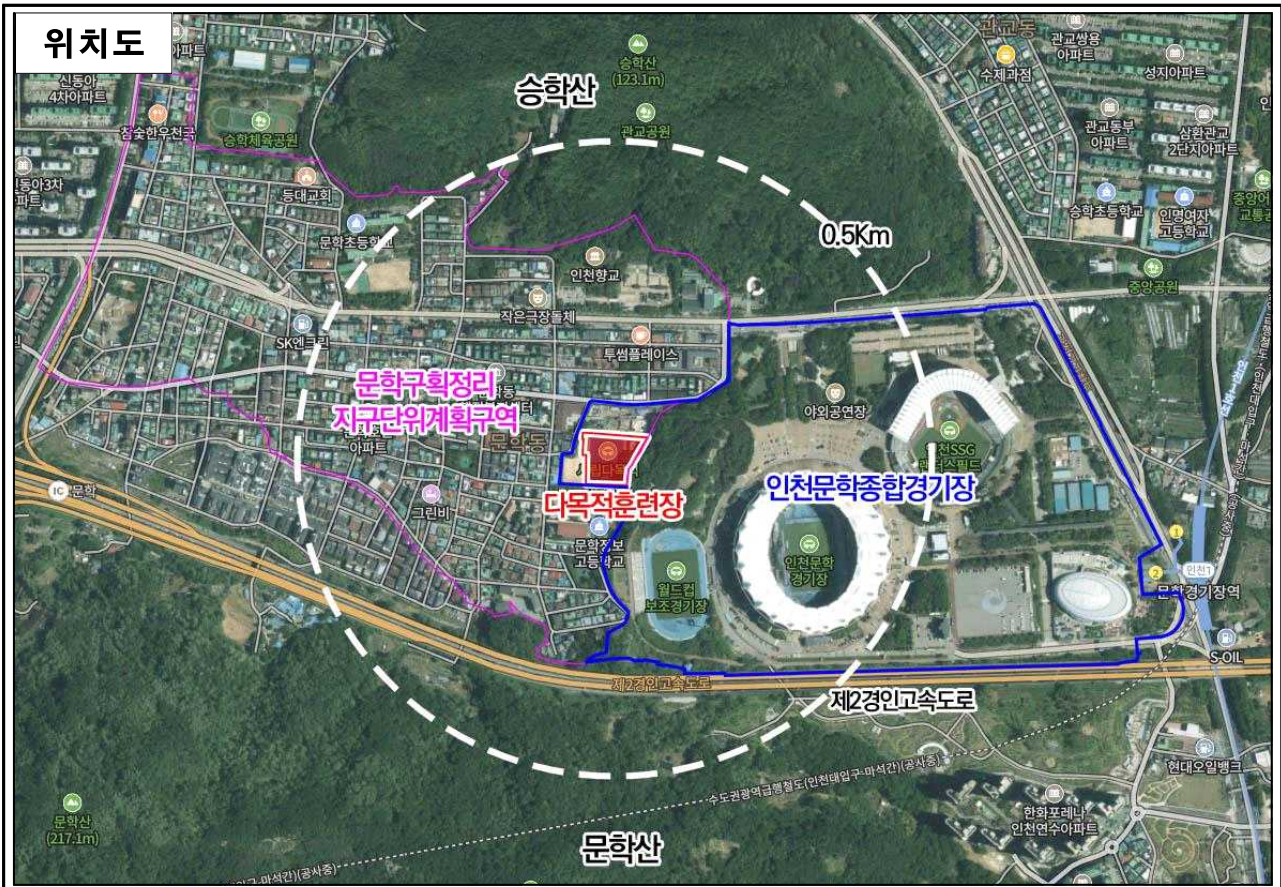
6. 향후 계획

- 2026. 4.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 2026. 5. :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운동장)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
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- 붙임 1.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.
2. 도시관리계획결정도(안) 1부.
3.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(안)도 1부.
4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.

【붙임 1】

위치도 및 현황사진



대상지 현황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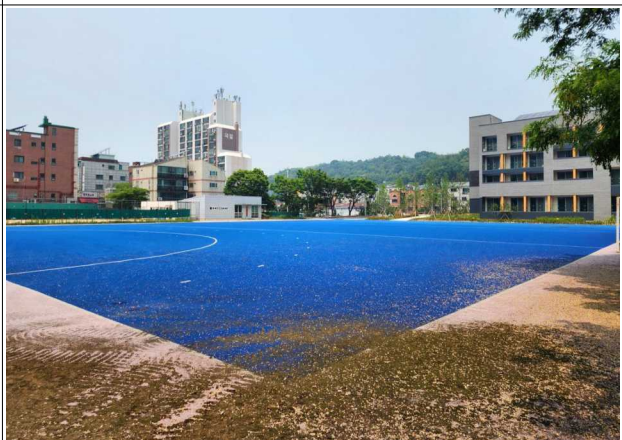
① 소성로350번길 (사거리)

② 문학경기장 내부 (테니스장)



③ 문학정보고등학교 입구

④ 대상지 내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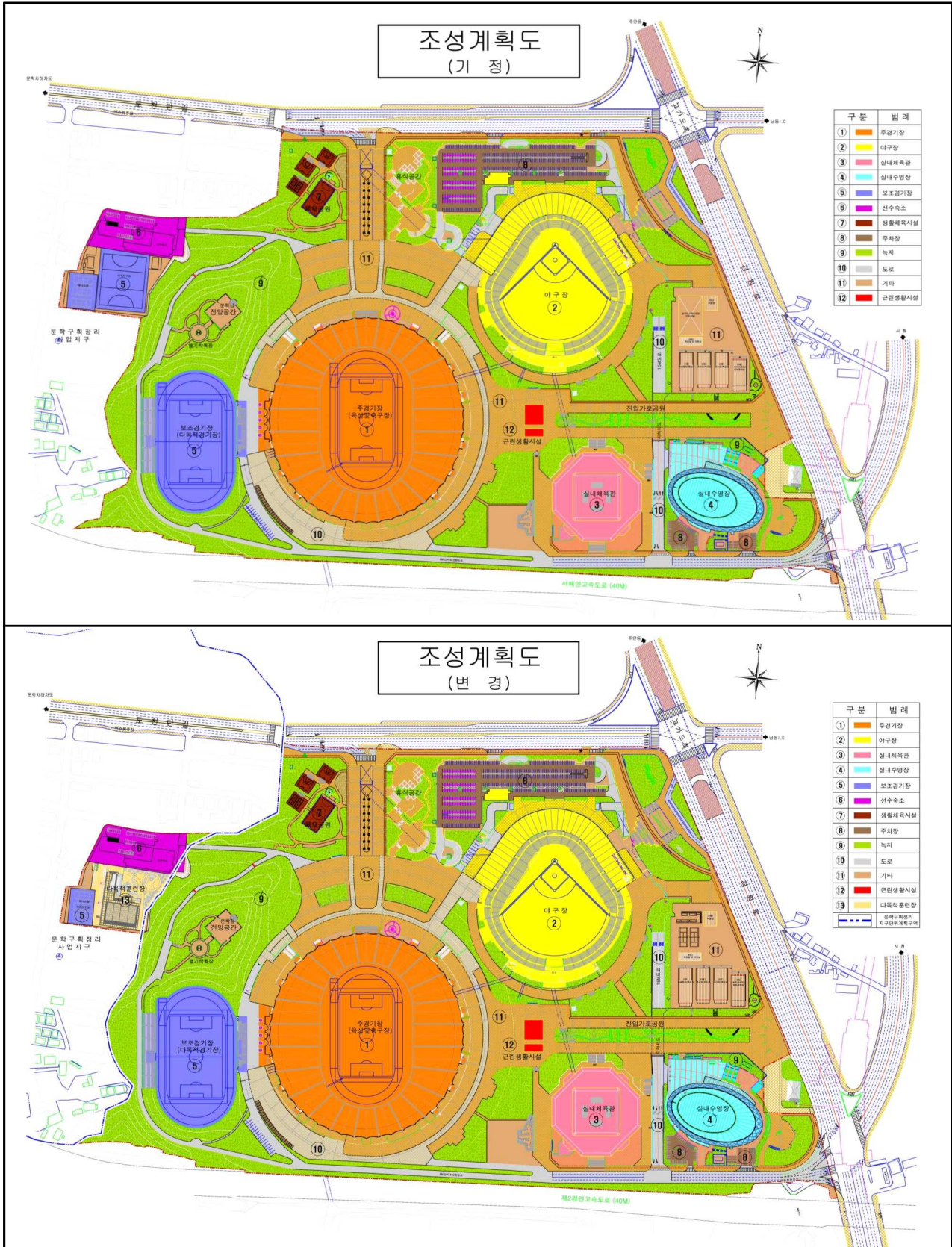
【붙임 2】

도시관리계획결정도(안) *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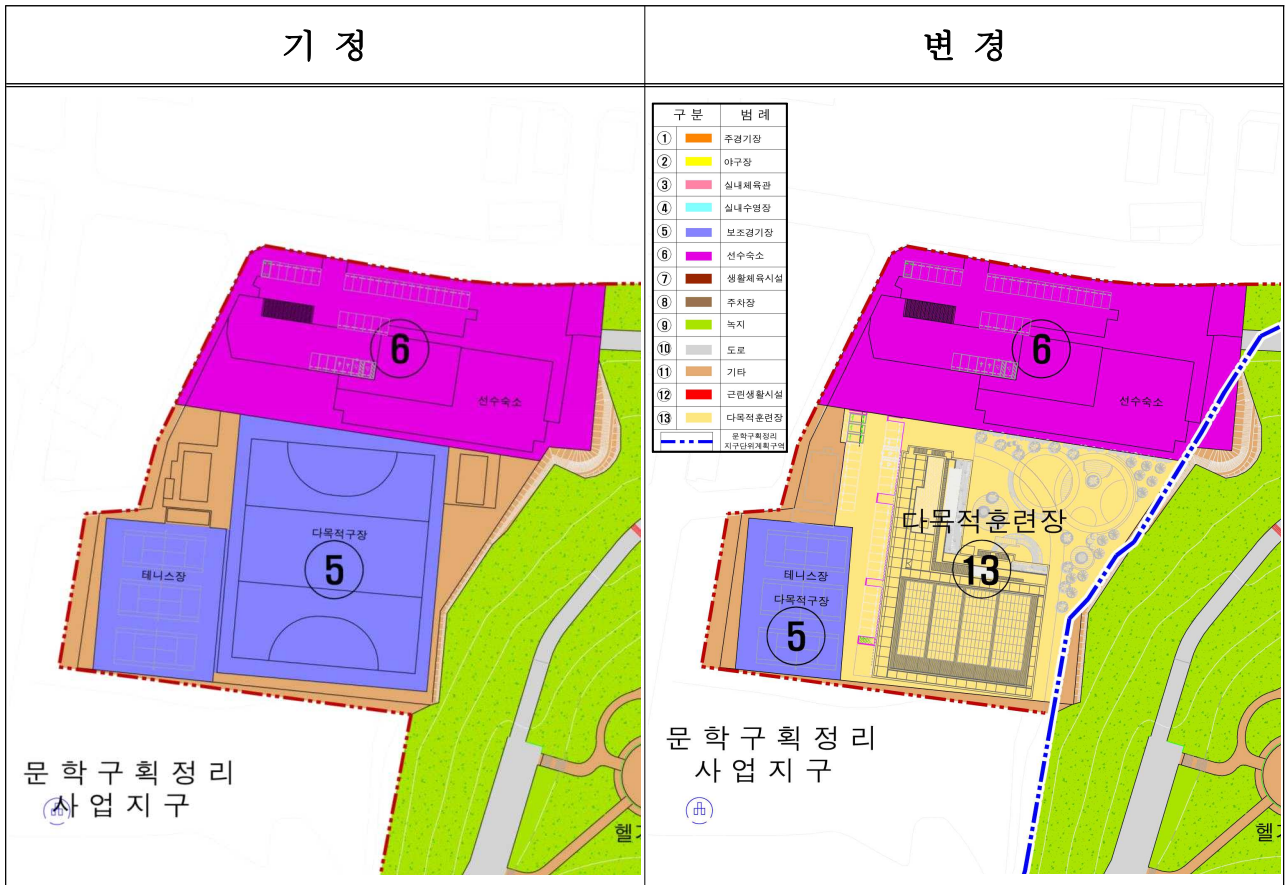


【붙임 3】

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(안)도



□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확대도



【붙임 4】

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※ 협의의견 제출기관(부서)/전체: 총 2개 / 7개 기관(부서)

기관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인천시 자연재난과	<p>가. 해당 개발사업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(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) 협의 시행(2005. 7. 27.) 이전에 행정 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완료되어 재해영향 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않은 부지에서 시행 하는 개발사업이며,</p> <p>나.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 에서 하는 개발사업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다. 다만, 개발사업으로 인해 불투수층의 면적이 증가하거나, 토지의 형질 변경*이 발생 할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.</p> <p>* 절토·성토 계획 없이 건축행위만 발생 하는 경우 제외. 끝</p>	<p>○ 반영여부 : 반영</p> <p>○ 반영시기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시</p> <p>○ 반영내용</p> <p>- 금회 다목적훈련장 신축으로 인해 불투수층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며, 토지의 형질 변경이 발생 하지 않는 사항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</p>	반영
인천시 교통정책과	<p>○ 미추홀구 문학동 338번지 일원 문학경기장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세부시설 조성계획과 관련하여,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교통영향 평가 교통개선대책을 통보 받은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, 변경 처리 관련 규정*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* (관련 법규)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 등, (관련 안내) 市 교통정책과-12836(2025.10.20.)호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[도시교통정비촉진법 : 교통영향평가 조치 사항 (준공 후 사후 관리 규정) 제24조의2(사후관리)]</p> <p>①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·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·관리·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※ (참고 : 대상사업 및 시행시기 등)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</p> <p>* 교통영향평가서 변경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교통 개선필요 사항 등 변경은 사업시행기관(부서)의 법적 행정 사무로 사업계획 변경 시 참고</p> </div>	<p>○ 반영여부 : 반영</p> <p>○ 반영시기 :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전</p> <p>○ 반영내용</p> <p>-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전 건축허가 승인 관청인 미추홀구청(교통행정과)과 협의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의2(사후관리)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사후 변경내용을 승인관청에 신고 하겠음.</p>	반영